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24.(수) 조간 2025. 12. 23.(화) 12:00	배포	2025. 12. 23.(화)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

-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 차별 없는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생활 전반의 접근성 확보 목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4일(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계획안은 **공청회**(12.15.)와 **편의증진심의회**(12.18.)*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장애인등편의법 제12조의2)

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①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②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

또한,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④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

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장애,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라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종합계획 체계도
2. 장애인 편의시설 개요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개요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춘희 (044-202-3307)
		담당자	사무관	김지혜 (044-202-3308)
<특별교통수단>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책임자	과 장	신보미 (044-201-3797)
		담당자	사무관	류나린 (044-201-4772)
<열린관광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미경 (044-203-2811)
		담당자	주무관	허병선 (044-203-2818)
<반다비 체육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책임자	과 장	홍덕호 (044-203-3181)
		담당자	사무관	문미진 (044-203-3183)

<대피도우미>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	책임자	과 장	조수창 (044-205-5210)
		담당자	연구관	진경혁 (044-205-5218)
<소방체험관>	소방청 생활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진욱 (044-205-7660)
		담당자	소방경	이건곤 (044-205-7666)
<나라통계 2.0>	국가데이터처 조사시스템관리과	책임자	과 장	황의태 (042-481-2434)
		담당자	사무관	손상호 (042-481-2453)
<ATM기>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55)
		담당자	사무관	임형선 (02-2100-2982)
<키오스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춘희 (044-202-3307)
		담당자	사무관	김지혜 (044-202-3308)
<키오스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책임자	팀 장	권오민 (044-202-6150)
		담당자	주무관	소민경 (044-202-6154)
<학교 내 편의시설>	교육부 특수정책교육과	책임자	과 장	진창원 (044-203-6554)
		담당자	사무관	윤영찬 (044-203-655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제6차 종합계획 체계도

목표	차별 없는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생활 전반의 접근성 확보

추진 전략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이용	장애인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
추진 과제	1 **교통환경 및 관광 여건 정비** ❶ 특별교통수단 확대 ❷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도입 ❸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❹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❺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비치 확대 ❻ 무장애관광 인프라 확충 및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강화** ❶ 무효 주차표지 반납 근거 마련 ❷ 주차표지 발급 기준 변경 검토(자동차→개인) ❸ 재발급 제한 관련 행복e음 기능 추가 ❹ 주차표지 서식 변경 ❺ 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불법주차 합동단속 ❻ 무효표지 집중회수 기간 운영	3 **편의시설 확대 및 설치기준 보완** ❶ 의무설치 대상 확대 ❷ 화장실 세부기준 추가 ❸ 독립형 화장실 설치 근거 마련 ❹ 경사로 비치 대상 확대 ❺ 경사로 설치 매뉴얼 개발 ❻ 편의시설 설치 기준 ISO 국제 표준 반영 4 **주거·문화·체육 편의 및 재난 안전 확보** ❶ 주거약자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❷ 전세주택 지원, 주거복지센터 확대 ❸ 반다비체육센터 설치 지원 ❹ 스포츠 경기장 관람 환경 개선 ❺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설치기준 개정 ❻ 대피 도우미 매칭 ❼ 장애인 접근을 위한 소방체험관 시설개선	5 **편의시설 현황 정보 활용성 제고** ❶ 실태조사 대상 확대 ❷ 편의시설 정보 현행화 주기 단축 ❸ 전수조사 결과 나라통계2.0 탑재 ❹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웹 접근성 확보 ❺ 지침 제공 플랫폼 운영 6 **일상의 정보 접근 개선** ❶ 접근가능한 ATM기 보급 ❷ IT 보조기기 보급 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❹ 정보 활용 교육 실시 ❺ 전자문서 점자 변환 시스템 설치 지원 ❻ 학교 편의시설 지원	7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강화** ❶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개정 ❷ 모니터링을 통한 유지관리·품질 제고 ❸ 편의시설 관련 빈발 민원 분석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 ❶ 인증 대상 확대 및 기준 개정 ❷ 인증 인센티브 마련 ❸ 수수료 현실화 및 인증기관 확대 ❹ 인증운영기관 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 ❺ 해설서 제작 및 교육 9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제품 사용성 개선** ❶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 ❷ 공모전 및 전시 ❸ 국제세미나 개최

붙임2 장애인 편의시설 개요

□ 의의

○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는 시설과 설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지자체의 **건축허가 행위**가 있을 때 **편의시설 설치 확인* 절차**를 거침

*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행('25년 기준)

□ 편의시설 설치 대상 및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대상)**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공연장, 청사 등),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통신시설

○ **(편의시설 종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높이차이 제거된 출입구(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등

□ 제재 수단 및 인센티브

○ **(제재수단) 시정조치 요청**(복지부 → 지자체), **시정명령**(지자체 → 시설주),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지자체 → 시설주)

○ **편의시설을 설치한 건물을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 부여**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매년**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5년마다 전수조사 실시**

<편의시설 설치율, 적정설치율*>

연도(년)	1998	2003	2008	2013	2018	2023
설치율(%)	47.4	75.8	77.5	67.9	80.2	89.2
적정설치율(%)	-	-	55.8	60.2	74.8	79.2

* 편의시설 **설치율**은 **단순 설치여부**로, **적정설치율**은 **기준 충족한 설치여부**로 판단

붙임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개요

□ 의의 및 인증 체계

○ (의의) 장애인 등이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 실적 : ('21) 2,222건 → ('22) 2,125건 → ('23) 2,422건 → ('24) 2,640건

○ (**인증 체계**) 인증을 취득하려는 자가 인증을 신청(수수료 납부)하면 인증기관 심의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함,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성

예비인증		본인증	
건축물 인허가 (설계단계) →	**착공** (공사) →	사용승인 전 (설계대로 건축 여부 확인) →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생성)

□ 인증 의무대상 및 이행강제수단

○ (**의무대상**) ▲국가·지자체 등이 설치하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민간이 설치하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같은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이행강제수단**) 의무 대상 인증 미취득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27조), 유지관리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제10조의5), 인증 취소(제10조의6)

□ 인증 기준 및 수수료

○ (**기준**) 건물 출입구 접근부터 건물 내부 이동이 원활한지 평가

①**매개시설**(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문), ②**내부시설**(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③**위생시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 ④**안내시설**(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⑤**기타시설**(객실, 침실, 관람석 등), ⑥**기타설비**(비치용품)에 대해 94**개의** 지표 설정

○ (**수수료**) 면적별에 따라 103~309만 원(예비인증), 201.5~604.5만 원(본인증)